

# 「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」 일부 개정

## 1. 개정이유

법 개정(19.1.15 공포)으로 「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대체자료 기재 사전심사」 제도가 도입·시행(21.1.16)된 이후,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주문자상표부착생산 형태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생산토록 하는 제조위탁 생산의 경우,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
-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비밀 심사를 신청한 경우, 그 결과를 수탁사에게 제공토록 명시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4조,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, 제156조부터 제171조까지, 별표 18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화학물질의 분류·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“제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가. 직접 사용 또는 양도·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,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

나. 직접 사용 또는 양도·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(성능·기능, 원재료 구성 설계 등)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
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,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제조”란 <u>직접 사용 또는 양도·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,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3조(양도 및 제공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① ----- ----- 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제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직접 사용 또는 양도·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생산, 가공 또는 혼합 등을 하는 것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직접 사용 또는 양도·제공을 목적으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직접 기획(성능·기능, 원재료 구성 설계 등)하여 다른 생산업체에 위탁해 자기명의로 생산하게 하는 것</u>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양도 및 제공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위탁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거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</u></p>

여 그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,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통지받은 승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